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4,689,326	14,840,680
일반회계	451,242,916	13,537,287
특별회계	43,446,410	1,303,392
기타특별회계	43,446,410	1,303,3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68,682	164,0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940,460	508,214
수질개선특별회계	8,392,797	251,7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9,868	5,09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50,473	22,514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60,600	10,818
주차장특별회계	190,210	5,706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66,686	2,001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193,501	275,805
행복주택특별회계	1,091,595	32,748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821,538	24,64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